

제 249 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6.24.)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총무위원회

목 차

- 1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2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4.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6. 2. 신재화 의원 등 8인 발의
- 다. 회부일자 : 2020. 6. 1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9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6.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재화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범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명 변경
- 2) 용어 정의 및 지원대상 확대 (안 제2조 ~ 안 제3조)
- 3) 지원범위 규정 (안 제4조)
- 4) 조문정비 (안 제5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조례의 제명을 변경(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하였으며
-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에 외국인 명예경찰대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 안 전반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우리군의 외국인(다문화) 명예경찰대는 2016년 6월 29일 결성되어 별도의 임기 없이 결혼이주여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외국인 사건 관련 신고 및 통역 활동과 관내 범죄예방 순찰 및 홍보활동을 해오고 있음.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군”을 “거창군”으로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중 “자율방범대와 연합회”를 “자율방범대와 연합회,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가”를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방범초소 개선사업
3.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군수는 자율방범대의”를 “군수는”으로 한다.

제6조 중 “공적이 뚜렷한 자율방범대와”를 “공적이 현저한”으로 한다.

제7조 중 “자율방범대원”을 “대원”으로 한다

제8조·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군</u>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치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u>자율방범대</u>가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율방범대”란 <u>군</u>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p> <p>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u>자율방범대와 연합회</u>로 한다.</p>	<p><u>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u>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치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u>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u>가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율방범대”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u>“외국인 명예경찰대”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u></p>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u>자율방범대와 연합회, 외국인 명예경찰대</u>로 한다.</p>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법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방법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구입비 등 소모성 운용비, 야식비, 출동비
2. 방법초소 유지 및 관리 비용
3. 체육대회 등 자율방법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법대 및 연합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법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자율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생략)

② 군수는 자율방법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방법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율방법대와 대원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법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방법초소 개선사업
3.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방법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대원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4.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6. 2. 심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 다. 회부일자 : 2020. 6. 1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9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0. 6.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심재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2조)
- 2)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제4조)
-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조례안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에서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관내 활동 중인 장애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의 사업수요가 현재까지는 없었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우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중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